



제 42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51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2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3
1) 농림축산식품부	3
2) 기획재정부	3
3) 농촌진흥청	3
4) 전통주 업계	3
나. 검토의견	4
1) 전통주 등 현황	4
2)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한 검토	7
2. 동일·유사 명칭 사용금지 및 과태료 부과	13
가. 관계 부처 의견	13
1) 농림축산식품부	13
나. 검토의견	14
[참고자료]	1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호선의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4. 11.
3. 회 부 일 : 2025. 4.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주 품질향상 등을 통하여 전통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최근 “혼술 문화”가 확산되고 고급 주류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하여 젊은 세대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주 제조업체는 대다수가 소규모 업체로서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역량이 부족하고 홍보·마케팅 부분에서도 경쟁력이 미흡하여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전통주 산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관인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주의 가치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전통주 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통주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전통주산업진흥원의 설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주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개발 2. 전통주 등의 생산 기술 개발 지원 및 품질관리 3. 전통주 등의 특허출원 및 사업화 촉진 4. 전통주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5. 전통주 등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④ 국가는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아닌 자는 전통주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은 전통주 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관계 부처의 수용곤란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기획재정부

농촌진흥청, 시·도 농업기술센터 등의 기관에서 전통주 연구개발이 이미 진행 중이므로 별도의 기관 신설은 수용하기 어려움.

3) 농촌진흥청

전통주산업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과 한국식품연구원 등 관련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정책과 예산 효율성 배분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 전통주 업계 (한국증류주협회 및 한국와인생산협회)

현재 전통주 등의 진흥 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장기발전 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등을 하고, 산하에 “전통주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전통주 발전에 전문적인 연구, 진흥, 교육, 홍보·마케팅 지원 등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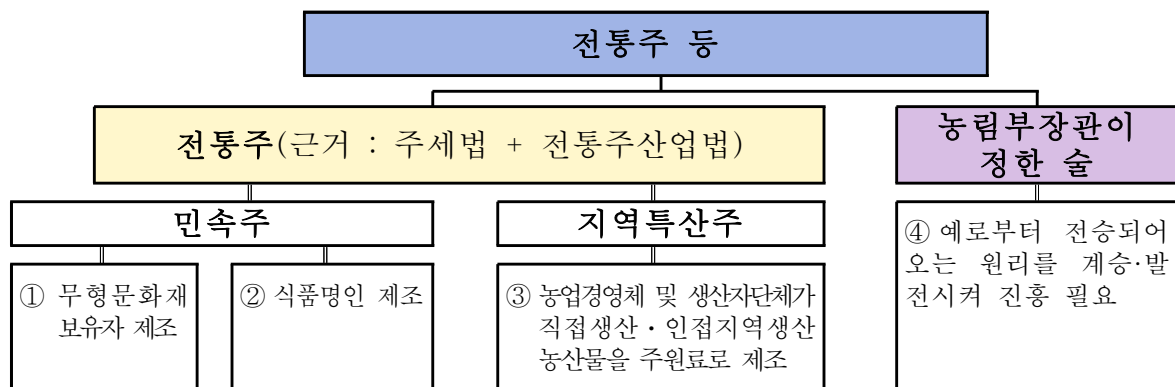
나. 검토의견

1) 전통주 등 현황

현행법¹⁾에 따르면 “전통주”는 ①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② 대한민
국식품명인이 제조한 민속주와 ③ 직접생산 또는 관할·인접 지역에서 생
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지역특산주를 의미함.

한편, “전통주 등”은 상기 전통주에 더해, ④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주산업법”)의 진흥대상에 포함됨.

[전통주 등 체계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25.6.5 제출)

- 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3. “전통주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 가. 전통주
 - 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

현재, “전통주”는 1,812개 제조면허가 발급되어 있으며, 주 원료의 국산 농산물 사용이 의무적이고 「주세법」에 따른 세제 혜택 등이 부여됨.

[「주세법상」 전통주 세제혜택]

내용			기준	발효주류	증류주류
주세 감면 (일정 물량) 「주세법」 제8조제3항	감면 요건 (신규 면허자는 제한 없음)		전년도 생산량	1,000kℓ 이하 제조	500kℓ 이하 제조
	내 용	50% 감면	금년도 생산량	~200kℓ이하 반출	~100kℓ이하 반출
		30% 감면		200초과~400kℓ 이하 반출	100초과~200kℓ 이하 반출
과세표준 공제 「주세법」제7조제3항			○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공제		
온라인 판매 허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4조			○ 전통주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터넷)과 휴대 전화 앱(app)을 이용한 통신판매 허용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25.6.5 제출)를 재구성

또한, “전통주 등”으로 추가되는 술은 고시·공고 등을 통해 지정·관리 되지는 않고 사업별 필요에 따라 포함되는 개념으로, 서울장수막걸리 등 대중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이 이에 해당하며 원료농산물 사용에 제한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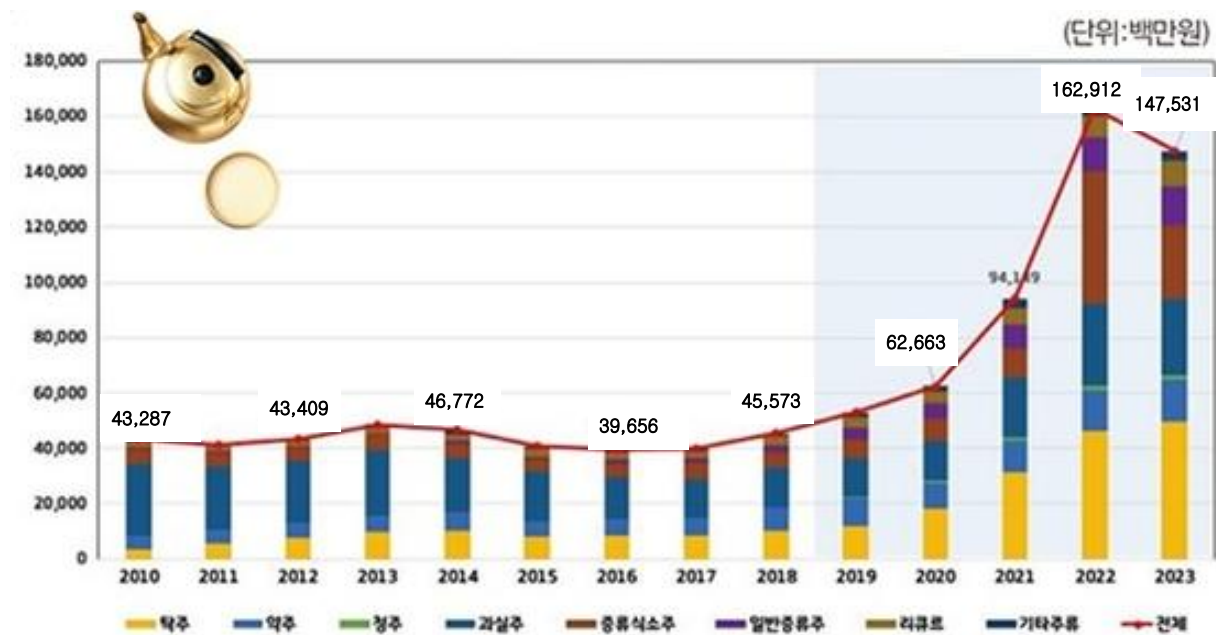
이러한 전통주 산업은 쌀, 보리, 밀 등 국산농산물을 주 원료²⁾로 사용하여 농가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고유의 양조기술이라는 지역전통문화를 계승하며,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

이와 같은 산업적 중요도에 따라 국회는 2010년 「전통주산업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기반하여([참고자료 1]), 양조장 시설개선 등 다양한 진흥사업과 연구 기술을 개발([참고자료 2])을 추진해 왔음.

2) 2022년 기준 전통주업계의 쌀 소비량은 1만 9,000t이고, 이 중 국산쌀 소비량은 29.4%인 5,600t임.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업계에서 국산쌀 소비량을 5년 내에 6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음.(“전통주 육성…5년 내 주류업계 국산쌀 소비량 3만t으로”, 2025.2.20. 이데일리)

그 결과, 전통주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여 최근 10년간 출하액과 출고금액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22년에는 출하액이 전년 대비 73.0% 증가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³⁾

[전통주 출고액 추이]



※ 자료: 「전통주를 중심으로 한 국내주류산업활성화 방안」(경기도농업기술원, 2025. 2.)

3) 이는 프리미엄 전통주에 대한 수요 증가, 젊은 세대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 증가, 혼술 문화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임.

*“2030세대, 독특한 전통주 고른다”(2024.10.7. 헤럴드경제), “화려함으로 MZ 잡았다. 전통주 온라인서 잘 팔리네”(2024.7.18. 매일경제), 혼술·홈술 등은 롱런 트렌드(2022년 소비자 실태조사)

2)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한 검토

전통주 제조업체는 85.8%가 연매출액 10억원 미만이고, 종사자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 77.8%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종사자가 3.5명에 불과할 정도로 업계 전반이 영세한 구조를 보임.

[전통주업 제조업체 종사자 및 매출액 현황]

매출액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 2억원 미만	2억원 ~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비율	18.2%	13.6%	31.5%	22.5%	14.2%

종사자 수	2인이하	3~4인	5~9인	10~19인	20인 이상
비율	52.6%	25.2%	16.2%	5.6%	0.3%

※ 자료: 「2023년도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농림축산식품부, 2024. 12.)

이와 같은 전통주 업계의 영세한 구조에 따라 자금 및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 연구·개발(R&D), 품질 관리, 유통망 구축,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이 저하되는 실정임.

또한, 전통주 관련 정책이 농림축산식품부(총괄),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 안전관리), 국세청(제조면허, 주류과세·유통), 행정안전부(지역산업 육성),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자산 육성) 등에 분산되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내에서 다수 기관⁴⁾에 위탁하여, 정책 간 연계가 어렵고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전통주 진흥사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통주 품질인증 및 교육훈련), 한국식품연구원(전통주 R&D), 한국농촌경제연구원(전통주 R&D), 국립식량과학원(전통주 R&D) 등

[전통주 등 관련 부처 간 업무분담현황]

구 분	역 할
농림축산식품부	- 전통주 육성 정책 총괄(기본계획 수립, 전통주 유통·판로 확대 지원, 농산물 소비 촉진 연계, 전통 식문화 전승·홍보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 전통주 원재료, 첨가물, 표시기준 등 규제
국세청	- 주류 제조 면허 관리 - 주류 과세 및 유통관리, 불법 주류 단속 및 세금징수
산업통상자원부	- 전통주의 산업화 및 상품화 지원, 수출 촉진 및 해외 마케팅 지원 - 지역 특산물 브랜드화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 지역축제·로컬브랜드와 연계 정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전통주를 문화자산으로 육성 - 전통주 관련 홍보·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획재정부	- 전통주 세제 혜택 및 감면 정책 설계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주 제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 스마트 양조시설 등 스마트화 사업 추진
농촌진흥청	- 전통주 관련 발효기술·제조기술 R&D - 전통주 원료 곡물 품종 개발, 품질 향상, 자동화 등 기술지원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25.6.5 제출)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⁵⁾되고 있는바, 개정안은 전통주 산업 지원의 종합적 역할을 수행할 “전통주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기반으로 전통주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전통주 산업과 더불어 국내 농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추산한 연구⁶⁾를 살펴보면, 3년간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1,868억원의 전통주 시장규모 확대 및 수출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추정한 바 있음.

5) 「전통주 산업의 정책동향과 발전과제」(국회입법조사처, 2023. 12.),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 필요성 및 마스터플랜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10.) 등

6) 「(가칭)전통주산업진흥원의 입지 선정 기준 및 기대효과」(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해외에서는 프랑스가 2007년 포도 및 포도주 연구기관을 합병하여 포도와인연구소(IFV)를 설립하였고, 일본은 2001년부터 주류종합연구소(NRIB)를 독립행정기관으로 설립하여, 각각 진흥사업·품질평가·기술연구를 하는 등 다수 국가에서 자국의 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음([참고자료4] 참조).

국내 사례로는, 2010년 한식진흥원⁷⁾을 설립하면서 한식 진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고, 2019년에 「한식진흥법」을 제정하여 종합적인 진흥 전담기관으로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⁸⁾

다만, 개정안 심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먼저, 국가 재정부담 측면에서 볼 때,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건설비·장비비 70.9 ~ 314억원, 매년 인건비등 18 ~ 6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 비용(예상)]

	건설비·장비비	인건비등	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70.9</u> ~ 139.8억원	48.2 ~ <u>60</u> 억원	119.1 ~ 199.8억원
충청남도	145.9 ~ <u>314</u> 억원	27.8 ~ 35.3억원	173.7 ~ 349.3억원
한국식품연구원	218억원	<u>18</u> ~ 23억원	236 ~ 241억원
국회예산정책처	미첨부		미첨부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는 미첨부됨(사유: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

※자료: 「(가칭)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 필요성 및 마스터플랜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10.), 「전통주 고부가 상품개발 및 산업화기반 구축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10.), 「국립주류연구소 충남도 유치에 관한 타당성 및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충청남도, 2017.12), 「한국술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조사 보고서」(한국식품연구원, 2018.7)

7) 2010년에는 한식재단으로 출범하였으며, 2016년 한식진흥원으로 기관명 변경

8)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0년에는 해외에 미쉐린스타급 한식당이 없었으나, 2024년에는 해외 31곳에 달함.

또한, 신설하려는 “전통주산업진흥원”은 전통주 산업진흥의 총괄기관으로서, ① 정책의 수립·개발, ② 생산기술 개발 지원 및 품질관리, ③ 특허출원 및 사업화 촉진, ④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⑤ 홍보, ⑥ 기타 위탁사업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함.

그러나, 현행 「전통주산업법」을 살펴보면, 전통주 관련 제조기술 등의 연구개발 지원(법 제7조제2항⁹⁾), 품질인증기관 지정(법 제23조¹⁰⁾), 교육훈련기관 지정(법 제11조제2항¹¹⁾),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12조제2항¹²⁾), 홍보단체 지원(법 제13조~16조¹³⁾) 등 진흥원이 담당하려는 업무와 유사한 지원 및 관리체계를 이미 규정하고 있음.

실제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을 총괄하면서, ① 홍보·진흥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② 품질인증 및 교육훈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③ 제조기술 등 연구개발은 한국식품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기관이 실시하고 있음.

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및 연구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술에 대한 품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1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훈련)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전문인력 양성)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주 등의 홍보, 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및 세계화 촉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술 산업의 육성과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술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개척을 하는 자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으로 전통주산업진흥원이 설립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전통주 산업의 지정·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전통주산업진흥원으로 일원화할 수 있을 여지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전통주산업 진흥 관련 업무 수행 현황]

개정안 전통주산업진흥원 사업	현행법		관련 사업수행 기관
	조항	내용	
1. 정책의 수립·개발	제4조 등 법 전체	기본계획수립, 시책추진 등	농림축산식품부 고유권한
2. 생산기술 개발 지원 및 품질관리	제7조 제2항	제조기술 등 연구개발 지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국립식량과학원
	제23조	품질인증기관 지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 특허출원 및 사업화 촉진	제34조	권한 위임·위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제11조 제2항	교육훈련기관 지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12조 제2항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5. 홍보 사업	제13조~ 제16조	홍보단체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6. 그 밖에 위탁 사업	-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25.6.5.)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4월 “전통주 산업진흥 협의체([참고 자료 3] 참조)”를 발족하면서 총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사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맡도록 하고 있음.¹⁴⁾

[전통주 산업진흥 협의체 구성도]

총괄	농림축산식품부(단장:식품산업정책관) * 간사: 식품외식산업과장										
주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부문	산업				학계	기관					
참여 기관	한국전통 민속주협회	한국 맥주협회	한국와인 생산협회	특정주류 유통협회	대학 교수 등 전문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 농업 과학원	경기도 농업 기술원	한국 식품 연구원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	전통주 갤러리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25.6.5. 제출)

14) 동 협의체는 한국전통민속주협회 등 산업관계자,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이 함께 전통주 산업의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협의체로, 최근에는 “소량 주원료 조달지역 확대” 등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한 과제를 논의한바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전통주산업진흥원이 신설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할 경우, 기존 전문기관들과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조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임.

이를 종합하면, 개정안은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를 통해 ① 전통주 시장 성장, ② 해외 수출 확대, ③ 국산농산물 소비 증가로 인한 농가와의 상생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나,

④ 기관의 신설·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 ⑤ 관련 기관 간 사업수행체계의 조정과정 등이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법제적인 측면에서 다음의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먼저, 안 제12조의2제3항제1호는 전통주산업진흥원의 사업으로 “정책의 수립·개발”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사항은 전통주산업법 전반에 걸쳐 농림축산식품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흥원의 사업은 정책의 수립·개발 지원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으로, 안 제12조의2제3항제6호는 전통주산업진흥원의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통주 산업에는 다수의 부처가 관계되므로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과 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어 보임.

2. 동일·유사 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

안 제38조제2항제1호는 “전통주산업진흥원”과 동일·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38조(과태료)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설></u> 1.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3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제12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전통주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참고규정: 안 제12조의2제7항 제12조의2(전통주산업진흥원의 설립) ⑦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아닌 자는 전통주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관계 부처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동일·유사 명칭 사용금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해 이견 없음.

나. 검토 의견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자격단체의 권리와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무자격자의 자격자 사칭이나 유사단체의 난립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동일·유사 명칭 사용 금지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임.

이는 일반적으로 입법례에서 채택되는 방식이며, 과태료 액수(500만원 이하)도 다른 법률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임.

유사 입법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또는 이와 <u>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u> 제24조(과태료) ① 제10조를 위반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u>500만원 이하의 과태료</u> 를 부과한다.
유사 입법례: 「국민건강보험법」
제10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아닌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이와 <u>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u> 제11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500만원 이하의 과태료</u> 를 부과한다. 6. 제105조를 위반한 자

문 의 처

02)6788-5417

참 고 자 료

참고 1

「제3차(2023~2027)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 비전 및 전략

비전

세계인이 찾는 K-전통주

목표

- ◆ 명주(銘酒) 육성 생태계 조성 및 한식 연계 수출 상품화
- ◆ (부가가치 확대) 전통주류 매출액(출고액) : ('21) 1.2 → ('27) 2조원
- ◆ (해외시장 확대) 전통주류 수출액 : ('21) 23.4 → ('27) 50백만불
- ◆ (농촌연계) 지역 대표 문화 양조장 육성 : ('21) 0 → ('27) 10개소

중점 추진 전략

[전략 1]
혁신으로 성장하는
전통주 산업

- ▷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 ▷ 고품질 명주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 민간 주도의 산업 진흥 및 소비 활성화

[전략 2]
세계인과 함께하는
K-술

- ▷ 우리술의 세계적 위상 제고
- ▷ 한식 연계 홍보로 대외 인지도 강화
- ▷ 해외 주류시장 진출 등 수출 확대 지원

[전략 3]
농업·농촌과 상생하는
전통주 산업

- ▷ 강소 양조장을 지역 대표 문화·관광 상품화
- ▷ 국산 농산물 사용 등 농업연계 강화

[전략 4]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

- ▷ 통계 정비 및 인력육성
- ▷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영역 확장

추진 체계

- ◆ 업계·전문가 등 정책 고객과 협업 강화
- ◆ 정밀한 주류통계 구축

참고 2

한국술산업육성 사업 개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제출자료('25.6.4.)

- **(목적)** 전통주의 품질·경쟁력 향상, 소비·홍보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술 소비 확대 및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 **(지원대상)** 전통주 생산·판매업체,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
- **(시행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민간경상), 지자체(지자체경상)
- **(예산규모)** ('24년) 3,101백만원 → ('25년) **3,101백만원**(전년동)
- **주요 사업내용**(관련예산, 단위 : 백만원)
 -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국내 우수 전통주를 발굴하고 소비자 및 유통업계 연계 홍보를 통한 업계 판로 확대 및 산업 활성화 도모(**260**)
 -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소비자에게 우리 술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콘텐츠 제공으로 전통주의 인지도 확산 및 소비 촉진(**440**)
 - * (주요 행사) 개막식(우리술품평회 시상식 포함), 정책홍보관, 업체관(전시·시음·판매), 공개 컨설팅, 우리술 토크콘서트, 소비자 대상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 **(전통주 갤러리)** 전시·체험·컨설팅 등 우리술 종합홍보플랫폼 운영으로 전통주 인지도 제고 및 다양한 정보제공(**600**)
 - **(판로확대)**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판촉전 지원, 대형마트·편의점 연계 판촉 행사 진행 등 전통주 판매 지원(**199**)
 - **(찾아가는 양조장)** 지역의 특색있는 양조장을 발굴하여 생산에서 관광·체험까지 연계된 복합공간으로 육성(**462**)
 - **(양조장 컨설팅)** 창업자(3년 미만)의 경영 애로사항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신규 제조업체의 조기 정착 유도(**160**)
 - **(양조용 발효제 보급)** 양조용 국산 효모·누룩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한 업계 품질 경쟁력 강화 도모(**140**)

참고 3 전통주 산업진흥 협의체 개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4.4.2.)

1. 추진배경

- ☐ 전통주 관련 산·학·관 협의 채널 운영을 통해 의견수렴 및 소통·논의·협력함으로써, 전통주 산업진흥·발전 도모

2. 기본 운영 방향

- ☐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개선 과제 및 신규 정책 수요 도출
- ☐ 업계의 전통주 산업 동향 공유 등을 토대로 소통 활성화

3.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 (구성) 농식품부가 총괄·조정, aT가 주관하고, 산업, 관련기관, 전문가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전통주 산업진흥 협의체 구성도 >

총괄	농림축산식품부(단장:식품산업정책관) * 간사: 식품외식산업과장										
주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부문	산업				학계	기관					
참여 기관	한국전통 민주협회	한국 맥주협회	한국와인 생산협회	특정주류 유통협회	대학 교수 등 전문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 농업 과학원	경기도 농업 기술원	한국 식품 연구원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	전통주 갤러리

- ☐ (개최 주기) 반기 1회 전체 회의, 이슈 발생 시 수시 개최

4. 향후 계획

- ☐ '24. 4. 4.(목) Kick-Off 회의
- ☐ 전통주 산업진흥 협의회 개최(수시)

참고 4

전통주산업진흥원 유사 해외사례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제출자료('25.5.19.)

국가	기관	특징
일본	NRIB [주류총합연구소]	- 독립행정법인 - 주류원료분야·공정분야·미생물분야·효소공학 분야등으로구성 - 주류 분석·감정·주류 품질평가·주류에 관한 연구 및 조사·품평회개최
	기타 주요 연구소	- 농림수산성산하독립행정법인인 식품총합연구소(농업식품산업기술총합연구기구) - 전국 42개현은지자체별 자체 주류 연구소를 보유, 주류관련 종합적 연구 - 각 지방농업기술진흥원 중심 지방 연구단체의 농업 및 주류관련 연구 - 국립 야마나시대학의 와인과학연구센터에서의 와인과 포도학에 관한 연구활발
프랑스	포도와인연구소(IFV)	- 2007년 포도 및 포도주 관련 연구 기관*을 합병하여 설립 - 포도와 와인에 특화된 연구 수행 : 식물재배 및 화훼, 포도주 양조, 제품 마케팅 전반에 걸친 연구 수행 - 직원 수 140명, 연간 예산 142억 원(1,100만 유로), 40ha 면적의 포도 농장 보유
독일	Berlin 공대 맥주공학과	- 1년제 전문학사 과정개설 -미국, 캐나다, 일본, 남미등지에서온 학생들 수학 - 2년제 brew master과정 및 석박사과정 개설 (독일인 위주강의) - 유럽, 아시아 및 남미국가들과 산학협동 활발히 진행 - 세계최대 주류관련 효모은행 보유
	Munich공대 맥주공학과	- 2년제 brew master과정 개설 -독일인 및 외국학생들 수학 - 석박사과정 개설 (독일인 위주강의) - 맥주공학과를 세계최초로 개설 및 캠퍼스내 맥주공장 운영
	Doemens맥주기술원	- 독일인 및 외국인대상 양조교육실시 - 중국에 분원을 설립 활발한 양조교육 활동 - 국내 오비맥주와하이트맥주직원 교육받음
	Geisenheim대학	- 1872년에 설립된 독일 최대 포도주연구소 - 독일와인협회, 독일과학재단 및 독일연방식량농림부와 공동 연구 - 비스바덴대학과긴밀한 산학협동체제구축, 석박사과정개설 - 독일 포도주 산업 및 포도양조학발전에 지대한 영향 끼침 -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와 연구협약체결
	Hohenheim 대학	- 증류주관련 석박사과정 개설 - 지자체 및 협회와의 협동 연구체제 구축
미국	UC Davis [양조학과]	- 학사·석사·박사과정 개설 - 외국인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통한 자격증제도 시행 - 전세계 맥주/와인관련 대학 및 산업체등과 연구 활발히 진행 - 캘리포니아지역 와인발달에 지대한 영향 - 최근 연구결과를 워크샵이나학술발표를 통해 공개
	Cornell 대학 [양조학과]	- 뉴욕 와이너리에대한 학술적·기술적 연구정보 및 품질관리 수행 - 포도 및 와인에 대한 광범위한 data base 확보 및 보급 - 세미나등을통한 산학협동 수행
영국	Heroitwatt 대학 [IBD]	- 맥주, 증류주관련 brew, distiller, 산업체에 대한 교육 및 연구활동 - 양조 권위지인 The Journal of the Institutof Brewing (JIB)발행 -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지부를 설치 학술대회 개최

* 자료: 정철(2018); 박정민 외(2018).